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고속철도차량 운전면허의 운전경력 자격요건에 대한
근거 규정 마련 〉
■ 조정식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5984호)

2026. 4.

국 토 교 통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오 세 일

목 차

□ 조정식의원 대표발의(2215984)	1
Ⅰ. 제안경위	1
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Ⅲ. 검토의견	3
1. 고속철도차량 운전면허의 운전경력 자격요건에 대한 근거 규정 마련(안 제17조제2항)	3

□ 조정식의원 대표발의(2215984)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조정식의원 등 10인
2. 제 안 일 : 2025. 1. 12.
3. 회 부 일 : 2025. 1. 13.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철도차량 운전면허시험의 응시요건으로 신체검사 및 운전 적성검사 합격 및 운전교육훈련 이수만을 규정하고 있으나, 「철도안전법 시행규칙」은 운전면허시험 응시원서 제출에 관한 사항을 정하면서 고속철도차량 운전면허시험에 대해서는 추가로 운전업무 수행경력증명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있음.

그런데 추가 운전경력증명서 제출 요건은 사실상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의 응시자격을 제한하는 것으로, 이는 법률의 위임 없이 하위법령에서 임의로 응시요건을 추가하여 응시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내용으로 법률유보원칙에 위반된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하위법령에서 운전면허시험의 응시요건으로 운전경력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도록 명시적인 위임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

17조 제2항).

Ⅲ. 검토의견

1. 고속철도차량 운전면허의 운전경력 자격요건에 대한 근거 규정 마련(안 제 17조제2항)

현행법¹⁾은 철도차량 운전면허를 받으려는 사람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철도차량 운전면허시험(이하 “운전면허시험”이라 한다)에 합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운전면허시험 응시자격요건을 법률에서 정하고 있으나 운전경력요건에 대해서는 규정하지 않고 있음.

개정안은 운전면허시험의 응시를 위해서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운전경력 요건을 충족하도록 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17조(운전면허시험) ① (생략)	제17조(운전면허시험) ① (현행과 같음)
② 운전면허시험은 제11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u>아니하는</u> 사람으로서 제12조에 따른 신체검사 및 운전적성검사에 합격한 후 운전교육훈련을 받은	② ----- ----- ----- <u>아니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운전경력 요건을 충족하는</u> ----- -----

1) 「철도안전법」

제17조(운전면허시험) ① 운전면허를 받으려는 사람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철도차량 운전면허시험(이하 “운전면허시험”이라 한다)에 합격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② 운전면허시험은 제11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서 제12조에 따른 신체검사 및 운전적성검사에 합격한 후 운전교육훈련을 받은 사람이 응시할 수 있다. <개정 2025. 1. 31.>

③ 운전면허시험의 과목,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현행	개정안
사람이 응시할 수 있다. ③ (생략)	----- ----- ㄱ. ③ (현행과 같음) 부칙 <u>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u>

가. 검토의견

현행법 시행규칙 제24조제2항 및 [별표 10]에서는 운전면허시험의 응시자별 면허시험과목 및 합격기준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데, 고속철도차량 운전면허 응시자는 디젤차량 제1종 전기차량 또는 제2종 전기차량에 대한 운전업무 수행 경력이 3년 이상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고속철도는 일반열차보다 속도, 제동거리, 신호, 차량시스템이 복잡하여 고속철도 운전자는 높은 수준의 숙련과 상황판단 능력이 필요한 측면이 있고, 또한 다양한 이상상황·장애·기상·운행변경 경험 체득이 필요한 측면이 있다는 점에서, 운전면허 시 일정 수준 이상의 운전업무 경력이 요구될 필요가 있음.

< 철도차량 운전면허시험의 과목 및 합격기준(제24조제2항 관련) >

1. 운전면허 시험의 응시자별 면허시험 과목			
나. 운전면허 소지자			
소지면허	응시면허	필기시험	기능시험
1) 디젤차량 운전면허 제1종 전기차량 운전면허 제2종 전기차량 운전면허	고속철도차량 운전면허	- 고속철도 시스템 일반 - 고속철도차량의 구조 및 기능 - 고속철도 운전이론 일반 - 고속철도 운전 관련 규정 - 비상 시 조치 등	- 준비점검 - 제동 취급 - 제동기 외의 기기 취급 - 신호 준수, 운전 취급, 신호·선로 숙지 - 비상 시 조치 등
주) 고속철도차량 운전면허시험 응시자는 디젤차량, 제1종 전기차량 또는 제2종 전기차량에 대한 운전업무 수행 경력이 3년 이상 있어야 한다.			

자료 : 현행법 시행규칙 [별표 10]

그런데 현행법²⁾에서는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로 ①현행

2) 「철도안전법」

제10조(철도차량 운전면허) ① 철도차량을 운전하려는 사람은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철도차량 운전면허(이하 “운전면허”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16조에 따른 교육훈련 또는 제17조에 따른 운전면허시험을 위하여 철도차량을 운전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3. 23.>

② 「도시철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노면전차를 운전하려는 사람은 제1항에 따른 운전면허 외에 「도로교통법」 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를 받아야 한다. <신설 2018. 2. 21.>

③ 제1항에 따른 운전면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철도차량의 종류별로 받아야 한다. <개정 2018. 2. 21.>

제11조(운전면허의 결격사유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다. <개정 2014. 5. 21., 2017. 8. 9., 2020. 6. 9., 2024. 1. 16.>

1. 19세 미만인 사람
2. 철도차량 운전상의 위험과 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정신질환자 또는 뇌전증환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3. 철도차량 운전상의 위험과 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약물(「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류 및 「화학물질관리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환각물질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알코올 중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4. 두 귀의 청력 또는 두 눈의 시력을 완전히 상실한 사람

법 제11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서 ②제12조에 따른 신체검사 및 운전적성검사에 합격한 후 ③ 운전교육훈련을 받은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어 운전면허시험 응시자격으로 운전경력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고, 이와 관련된 위임규정도 없는 상황으로, 현행 운전경력요건은 법률상 근거 없이 시행규칙에 의하여 규정되고 있음.

이에 개정안은 운전경력에 관한 사항을 운전면허시험의 응시요건으로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으로, 국민의 기본권 제한에 관한 사항들을 시행규칙이 아닌 법률에 직접한다는 점에서 법률유보원칙에 부합하고, 운전면허시험 응시요건의 법적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제고한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보임.

참고로, 도로, 항공 등 다른 교통 분야도 운전면허시험의 응시자격으로 운전경력을 요건으로 두고 있으며, 해기사와 택시·버스 운전자격의

-
5.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하였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정지기간 중인 사람
- 제12조(운전면허의 신체검사)** ① 운전면허를 받으려는 사람은 철도차량 운전에 적합한 신체상태를 갖추고 있는지를 판정받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 합격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 제15조(운전적성검사)** ① 운전면허를 받으려는 사람은 철도차량 운전에 적합한 적성을 갖추고 있는지를 판정받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적성검사(이하 “운전적성검사”라 한다)에 합격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5. 7. 24.>
- 제16조(운전교육훈련)** ① 운전면허를 받으려는 사람은 철도차량의 안전한 운행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운전に必要な 지식과 능력을 습득할 수 있는 교육훈련(이하 “운전교육훈련”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 제17조(운전면허시험)** ① 운전면허를 받으려는 사람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철도차량 운전면허시험(이하 “운전면허시험”이라 한다)에 합격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 ② 운전면허시험은 제11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서 제12조에 따른 신체검사 및 운전적성검사에 합격한 후 운전교육훈련을 받은 사람이 응시할 수 있다. <개정 2025. 1. 31.>
- ③ 운전면허시험의 과목,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경우 운전경력요건을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음.

< 타 교통분야 운전면허 시 경력 관련 규정 >

법률명 (조문)	경력 관련 규정
항공안전법 (제34조제1항 및 시행규칙 제75조)	(조종사 자격증명) 자격증명 또는 자격증명의 한정을 받으려는 사람은 법 제3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서 별표 4에 따른 경력 을 가진 사람이어야 함
선박직원법 (제5조제1항)	(해기사 면허) 등급별 면허의 승무경력 또는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른 조종면허 등 승무경력으로 볼 수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경력이 있을 것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4조제1항)	(택시, 버스 운전자격) 국토교통부령 으로 정하는 나이와 운전경력 등 운전업무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는 것

2) 국토교통부 의견

개정안은 현재 법률의 근거 없이 국토교통부령에서 요구하는 내용에 대한 위임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기에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문 의 처

02)6788-5582

참고 1 철도차량 운전면허 시험 요건, 교육훈련, 실무수습 현황

□ 운전면허시험 응시(시행규칙 별표10)

○ 운전면허 시험 응시구분

가. 일반응시자 : 디젤차량, 제1종, 제2종 전기차량(별도요건 없음)

나. 운전면허 소지자

소지면허	응시면허	요건
디젤차량, 제1종, 제2종 전기차량	고속철도차량	운전업무 수행 경력이 3년 이상
디젤차량	제1종, 제2종 전기차량	운전업무수행 경력이 2년 이상, 운전교육훈련을 받은 사람은 필기시험 및 기능시험을 면제
제1종 전기차량	디젤차량, 제2종 전기차량	
제2종 전기차량	디젤차량, 제1종 전기차량	

□ 운전교육훈련(시행규칙 별표7)

교육과정		이론교육	기능교육
일반응시자	디젤차량, 제1종 전기차량 (810시간)	340시간	470시간
	제2종 전기차량 (680시간)	240시간	440시간
면허소지자	고속철도차량* (420시간)	140시간	280시간
	디젤차량, 제1종, 제2종 전기차량 (85시간)	50시간	35시간

* (고속철도차량) 디젤차량, 제1종 또는 제2종 전기차량의 운전업무 수행경력이 3년 이상

□ 운전실무수습(시행규칙 별표11)

교육과정		시간	거리
일반응시자	디젤차량, 제1종 전기차량	400시간 이상	8,000km 이상
	제2종 전기차량	400시간 이상	6,000km 이상
면허소지자	고속철도차량	200시간 이상	10,000km 이상
	디젤차량, 제1종 전기차량	200시간 이상	4,000km 이상
	제2종 전기차량	200시간 이상	3,000km 이상

참고 2

타법 운전면허 경력요건 명시적 위임근거 현황

구 분	명시적 위임 근거	경력요건
항공안전법 (제38조제3항)	○ 학과시험 및 실기시험에 합격하고, 자격 증명의 한정을 받으려는 사람은 국토교통 부령 이 정하는 기준이상의 근무경력 을 갖출것	운송용조종사(1,500시간 이상 비행 경력 등) 사업용조종사(200시간 이상 비행 경력 등) (응시제한)
선박직원법 (제5조제1항)	○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등급별 면허의 승무경력으로 볼수 있는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자격·경력 이 있을것	1급 항해사 : 2급 항해사·운항사 1,600톤 이상 상선 1년 이상 등 (자격발급제한)
여객 자동차법 (제24조제1항)	○ 택시, 버스 운전업무에 종사하려는 사람은 국토교통부령 으로 정하는 나이와 운전경력 등 운전업무에 필요한 요건을 갖출것	사업용 자동차 운전경력이 1년 이상 (응시제한)
도로교통법 (제82조제1항)	○ 택시, 버스 운전업무에 종사하려는 사람은 국토교통부령 으로 정하는 나이와 운전경력 등 운전업무에 필요한 요건을 갖출것	1종 대형, 특수 면허는 운전경 험이 1년 미만인 사람은 면허 결격 사유 (자격제한)
철도안전법 (제17조제2항)	X 결격사유 해당하지 아니하고, 신체검사 및 적성검사에 합격한 후 교육훈련을 받은사람	고속철도차량 운전면허는 운전 업무 수행경력 3년 이상(응시제한)

자료 : 국토교통부